



제 428회 국회 (임시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수산업 · 어촌 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수산업발전기금 용도에 외국인의 불법어업활동에 따른
피해지원 추가 등〉

■ 윤준병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1300호)

2025. 8.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문위원 김 성 완

목 차

I. 제안경위	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검토의견	3
1. 수산발전기금 용도에 외국인의 불법어업활동에 따른 피해지원 추가 등	3
[참고자료]	7

I. 제안경위

1. 제안자: 윤준병의원 등 15인

2. 제안일: 2025. 7. 7.

3. 회부일: 2025. 7. 8.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우리나라의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불법으로 어업활동을 한 외국인에 대하여 벌금을 부과하거나 추징, 나포(拿捕)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음.

하지만, 납부된 추징금 및 나포 시 석방 등을 조건으로 납입한 담보금 등이 외국인의 불법 어업활동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어업인과 피해지역과는 무관하게 일반회계로 귀속되고 있어 피해어업인과 피해지역을 지원하기 위한 용도로 활용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수산발전기금에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상의 추징금 및 국고귀속 담보금을 납입하도록 하고, 수산발전기금의 용도에 외국인의 불법 어업활동에 따른 피해어업인 및 피해지역에 대한 지원사업을 추가하려는 것

임(안 제46조 등).

이 법률안은 윤준병의원이 대표발의한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의안번호 제1129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하여야 할 것임.

Ⅲ. 검토의견

1. 수산발전기금 용도에 외국인의 불법어업활동에 따른 피해 지원 추가 등

가. 개정안의 요지

- 개정안은 수산업발전기금의 설치 목적에 외국인의 불법어업활동으로 피해를 입은 어업인 및 피해지역 지원을 추가하고,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외국인이 불법적으로 수행한 어업 등에 대해 부과·추징한 추징금 및 담보금을 기금의 재원에 포함하며, 동 피해에 대한 지원사업도 기금의 용도로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46조, 제47조 및 제49조).

[표]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46조(기금의 설치) 정부는 수산업 경영의 지원, 수산물 유통구조개선 및 가격안정, 경쟁력 있는 수산업 <u>육성에</u>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수산발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46조(기금의 설치) ----- ----- ----- ----- <u>육성, 외국인의 불법 어업 활동에 따른 피해어업인 및 피해 지역 지원에</u> -----.
제47조(기금의 조성)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 16. (생략) <u><신설></u>	제47조(기금의 조성) ① ----- ----- 1. ~ 16. (현행과 같음) <u>17.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u>

현행	개정안
② (생략) 제49조(기금의 용도)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용자, 보조 등의 방법으로 지원할 수 있다. 1. ~ 15. (생략) <u><신설></u> ② ~ ④ (생략)	<u>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추정금 및 같은 법 제24조에 따라 국고에 귀속되는 담보금</u> ② (현행과 같음) 제49조(기금의 용도) ① ----- ----- ----- -----. 1. ~ 15. (현행과 같음) 16. <u>「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외국인의 불법 어업 활동으로 피해를 입은 어업인 및 피해지역 지원사업</u> ② ~ ④ (현행과 같음)

나. 검토의견

□ 현재 EEZ 내 불법어업 외국어선에 대해서는 검사가 법령 위반자에게 담보금 결정서를 고지하여 담보금이 납부되면 선박과 선원을 즉시 반환·석방하고 있으며,¹⁾ 이 과정에서 납부된 담보금은 국고(일

1)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제23조(위반 선박 등에 대한 사법절차) ① 검사나 사법경찰관은 이 법, 이 법에 따른 명령 또는 제한이나 조건을 위반한 선박 또는 그 선박의 선장이나 그 밖의 위반자에 대하여 정선, 승선, 검색, 나포(拿捕)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사법경찰관은 제1항의 조치를 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를 검사에게 보고하되, 사정이 급하여 미리 지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검사의 지휘를 받아 제1항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반회계)로 귀속시키고 있음.²⁾

□ 개정안은 해당 담보금 등을 수산발전기금에 납입토록 하여, 이를 외국인의 불법어업활동으로 피해를 입은 어업인이나 피해지역에 대한 지원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외국인의 불법어업으로 인해 EEZ 내 수산자원이 지속적으로 손실되고 있는 점 및 우리 어업인에게 인적·물적 손해가 발생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개정안의 취지는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 것으로 보임.

□ 다만, 해양수산부는 담보금 제도의 운영 취지·목적과 현재 어업인 지원을 위한 예산 사업 등을 고려할 때 외국어선의 불법어업 담보금을 수산발전기금으로 납입하게 하는 것은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며,

기획재정부는 재정운용 효율성 및 벌금, 과태료 등이 일반회계에 귀속되는 유사사례 고려 시 담보금 등의 일반회계 귀속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제시하고 있음.

③ 검사는 제1항의 조치를 하였거나 제2항에 따른 보고를 받았을 때에는 선장이나 그 밖의 위반자에게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인이 하는 어업활동등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담보금이나 담보금 제공을 보증하는 서류가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검사에게 제출되었을 때에는 선장이나 그 밖의 위반자를 석방하고, 선박을 반환한다는 취지

2. 담보금의 금액

④ 검사는 제3항에 따라 고지된 담보금 또는 그 제공을 보증하는 서류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선장이나 그 밖의 위반자를 석방하고 선박을 반환하여야 한다.

⑤ 제3항제2호에 따른 담보금의 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검사가 위반 사항의 내용과 위반횟수,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정한다.

2) 담보금은 피고인(또는 선박 소유자)이 판결 후 부과될 벌금·추징금·소송 비용의 집행 담보 역할을 하며, 구체적으로 판결 확정으로 벌금형·추징금이 선고되면, 미납 시 담보금에서 충당하고, 벌금·추징금이 담보금보다 적으면 차액은 반환하고, 벌금·추징금이 담보금과 같거나 초과하면 해당 금액 전액이 국고로 귀속됨.

□ 따라서 개정안에 대해서는 담보금을 수산발전기금에 납입토록하여 피해 어업인 등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사업을 추진할 필요성과 관계 부처 의견 및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1299호, 윤준병의원안)」의 처리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입법정책적 결정이 필요할 것으로 봄.

문 의 처
02)6788-5422

참고 1

수산물발전기금 개요

설치근거	수산업·어촌발전기본법 제46조					
설치목적	수산업 경영의 지원, 수산물 유통구조개선 및 가격안정, 경쟁력 있는 수산업 육성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					
설치연도	1999		운용개시연도		2001	
기금관리(위탁)	수산발전기금사무국(7명)					
예산 (억원)	'24			'25	전년계획대비	
	계획(A)	실적(B)	달성(%)	계획(C)	증감(C-A)	증감률(%)
	8,434	8,785	104.2	8,204	△230	△2.7
조성재원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47조)	○ 어선·어구의 매각대금, 국가어항의 토지매각대금 ○ 해양환경개선부담금 및 가산금, 공유수면 점·사용료 ○ 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 수산물공매납입금, 해양심층수이용부담금 ○ 차입금 또는 차관 및 기금운용수익금 등					
기금의 용도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49조)	○ 기르는 어업의 육성, 어업경영기금의 융자 ○ 산지위탁판매사업 등 수산물유통구조의 개선 ○ 수산물의 생산조정 및 출하조절 등 가격안정에 관한 사업 ○ 수산물의 보관·관리, 새로운 어장의 개발, 수산물가공업의 육성 등					
여유자금 운용범위 (수산발전기금 운용 관리요령 제16조)	○ 금융기관 및 기획재정부가 관리하는 연기금 투자폴에의 예치 ○ 공공자금관리기금에의 예탁 ○ 주식, 사채, 기타 유가증권의 인수 또는 매입 등					

자료: 해양수산부

참고 2

2025년도 수산발전기금 운용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4	'25
수입 합계	843,400	820,384
① 자체수입	626,468	688,995
○ 용자원금회수제외	191,833	204,816
법정부담금	60,040	68,466
기타경상이전수입	3,821	4,507
재고자산매각대	112,112	117,753
공유수면점.사용료	5,000	4,000
기타이자 및 재산수입 등	10,860	10,090
○ 용자원금회수	434,635	484,179
② 정부내부수입	100,000	100,000
○ 공자기금 차입	100,000	100,000
③ 여유자금회수	116,932	31,389
지출 합계	843,400	815,302
① 사업비(경상+용자)	809,343	794,904
○ 경상사업	328,546	267,589
폐기물해양배출종합관리시스템구축	2,117	2,129
해양폐기물정화사업	48,229	46,341
해양생태계 서식처 기능개선 복원사업	23,142	5,260
수산물자조금지원	4,065	4,389
비축사업	206,500	175,100
수산물유통정보조사	712	771
연근해어장 생산성 개선 지원	15,495	15,513
수산모태펀드출자	19,000	7,000
피해보전직불금	1,000	1,000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	786	1,086
원양어선안전관리	7,500	9,000
○ 용자사업	480,797	527,315
② 기금운영비	668	699
③ 정부내부지출	2,000	-
○ 공자기금 예수이자	2,000	-
○ 공자기금 원금상환	-	-
④ 여유자금 운용규모	31,389	19,699

자료: 해양수산부